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2가단5359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경태현, 김지수, 서지선, 양석준, 정윤진, 윤석빈

이한나, 곽윤희, 김정대

피고1. D

2. E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이동훈

3. F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먼

담당변호사 김신호, 이희용

변론 종결2024. 9. 12.

판결 선고2024.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140,345,881원 및 위 돈 중 각

58,125,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9.부터, 각 82,220,881원에 대하여는 2024. 9. 13.부터, 각

2024. 10.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피고 D, E에 대하여 : 피고 D와 E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위와 같이 선택된다).

2. 피고 F조합에 대하여 : 피고 F조합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1. 10. 5. 접수 제517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위와 같이 선택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D는 각 원고들에게 174,39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각 원고들에게, 피고 D는 107,971,1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66,428,571원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들과 피고 D는 G(1939년생), H(1944년생)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 2) 피고 F조합(합병 전 : I조합)는 피고 D의 채권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M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24.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I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금융기관이다.

나. G, H, 피고 D의 부동산 취득 등

- 1) G은 1995. 8. 29. 이 사건 M아파트에 관하여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3. 13. 광주시 N아파트 O호(이하 'N아파트'라 한다)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G은 2006. 7. 25. N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7,900만 원에 P에게 매도하고, 2006. 10. 20. P 앞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 H 명의의 Q은행 펀드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H 펀드계좌'라 한다)에 2006. 10. 20. 93,955,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펀드계좌에서 2006. 10. 26. 2,700만 원이 출금되었다.
 - 4) G은 R은행으로부터 2006. 11. 15.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5) H 펀드계좌에서 2006. 11. 24. 67,186,005원이 출금되었고, H 명의의 Q은행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H 예금계좌'라 한다)에 같은 날 67,186,005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예금계좌에서 2006. 11. 25. 7,400만 원이 출금되었다.
 - 6) 한편, 피고 D는 2006. 10. 25. S과 사이에, 피고 D가 S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U호(이하 '이 사건 T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 피고 D는 2007. 1. 27. 피고 S과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1억 4,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피고 D는 2007. 7. 2. 이 사건 T아파트에 관하여

위 2007. 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피고 D는 2007. 7. 30. G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V 전 1,481m²(이하 '이 사건 V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위 V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망 G은 2016. 1. 14. 피고 D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였다.

9) H는 2019. 11. 8. W, X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Y아파트 Z호(이하 'Y아파트'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2020. 3. 6. 위 Y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1) H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는 2021. 5. 2.경 76,324,614원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2021. 5. 2. 위 계좌로부터 원고들 명의 계좌로 각 2,4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 H는 2021. 5. 3. 사망하였고(이하 '망 H'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과 자녀인 원고들, 피고 D가 있었다.

3) G과 원고들, 피고 D는 2021. 5. 3. 원고들이 Y아파트의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망 H 명의의 예금 117,000,000원을 각 1/3씩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2021. 6. 22.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Y아파트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M아파트 매매, G의 사망 및 사망 전후의 금전이체내역

1) G은 2021. 9. 23. R은행에서 신규로 AB통장-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G 신규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위 예금통장 인감(서명)란에는 G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D, E은 2021. 9. 24. G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M아파트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5억 7,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2021. 10. 1. G 신규계좌에 잔금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 D, E은 2021. 10. 5. 이 사건 M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 등기서류에는 G 본인이 2021. 9. 17.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있고, 위 인감증명서에는 G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 D, E은 이 사건 M아파트의 평가액과 위 매매대금의 차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2021. 10. 31.경 기흥세무서장에게 증여대상인 이 사건 M아파트의 지분율 50% 평가가액을 1억 3,550만 원으로 정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G은 2021. 11. 26.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였고, 2021. 11. 29.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A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G은 응급실 내원 당시 파킨슨병으로 치료 중이었고,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지 않았으나(drowsy), 이후 의식을 회복하여 명령에 따른 운동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obey)가 되었다. AC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G에 관하여 양쪽 폐에 폐렴 소견이 보인다고 진단하였고, G은 AC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6) 2021. 12. 3.경 G의 R은행 AD종합통장((계좌번호 5 생략), 이하 'G 기존계좌'라 한다)에는 망 H의 부의금 1,661만 원이 포함된 21,248,617원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2021. 12. 3. 피고 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G 신규계좌에는 2021. 12. 3.경 200,978,003원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2021. 12. 3. 피고 E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로 2억 원, A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78,003원이 이체되었다.

7) 2021. 12. 5. G 기존계좌에 피고 D로부터 2,000만 원, 피고 E으로부터 981,383원이 이체되었고, 이후 G 기존계좌에서 2021. 12. 7.부터 2021. 12. 8.까지 ATM출금으로 1,200만 원이 출금되었다.

8) G은 AC병원에서 혼미한 의식상태가 지속되고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자였던 피고 D가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G은 혈압저하, 저산소증(hypoxemia)의 진행으로 2021. 12. 10. AG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9) 2021. 12. 13. 피고 E 명의 계좌로부터 G 신규계좌에 2억 원이 이체되었다.

10) G은 AG요양병원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2021. 12. 15. 상태가 악화되었고, AG요양병원 측은 2021. 12. 15. 18:00경 피고 D에게 임종 전 면회에 관하여 연락하였다.

11) G 신규계좌에서 2021. 12. 15. 19:02부터 19:09까지 피고 E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으로 1억 원, 피고 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 G 기존계좌로

30,850원이 이체되었다.

12) G은 2021. 12. 15. 20:05 사망하였다(이하 '망 G'이라 한다).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D가 있었고, 사망 당시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마. 피고 D의 소득 및 피고 I조합의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 D의 1999.부터 2007.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피고 D는 2003. 6.경부터 2021. 12.까지 43,954,422원을 망 G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망 G에 관하여 지출하였다(이체수수료 포함, 부의금 제외).

2) 이 사건 M아파트에 관하여 2022. 2. 24. 앞서 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M아파트 및 V 토지의 시가

이 사건 M아파트의 2021. 12. 15.경 시가는 15억 원, 이 사건 V 토지의 2021. 12. 15.경 시가는 85,89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5, 18,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망 G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M아파트는 시가 약 15억 원의 부동산으로, 2021. 9. 24. 망 G과 피고 D, E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M아파트의 명의가 위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피고들이 망 G의 파킨슨병 악화를 이용하여 망 G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D, E 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M아파트의 각 1/4 지분을 각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D,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M아파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F조합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E에게 증여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배우자이자 망 G의 자녀인 피고 D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

망 G은 이 사건 M아파트 외에도 피고 D에게 이 사건 T아파트, V 토지 등을 증여하였고, 2016. 1.

14. 현금 1억 원도 증여하였던바, 위 각 증여들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액은 위 각 부동산 및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현금 가액 합계

1,395,198,000원(= 이 사건 M아파트 930,000,000원 + 이 사건 T아파트 272,300,000원 + 이

사건 V 토지 85,898,000원 + 현금 환산액 107,000,000원)이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174,399,750원(유류분 비율 각 1/8)이므로, 피고 D는 각 원고들에게 174,399,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M아파트 중 1/2 지분의 증여가 피고 D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로서 피고

E에 대한 증여가액 또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증자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D의 유류분 초과액은 755,798,250원, 피고

E의 증여재산 가액은 465,000,000원이므로, 각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피고 D는

107,971,179원($174,399,750\text{원} \times 0.62$), 피고 E은 66,428,571원($174,399,750\text{원} \times 0.3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G은 사망 이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나

원고들과 피고 D, 망 G이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하였던 2021. 5. 3.경에는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1. 9. 24.에

체결되었는데 그 사이에 망 G의 의사능력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D,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M아파트의 등기서류에는 망 G의 2021. 9. 17.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망 G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망 G이 매매대금 명목의 2억 3,000만 원을 이체받은 G 신규계좌 개설 시에도 예금통장 인감란에 자필서명이 기재된 점, ③ 원고들은 그 주장의 근거로 망 H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G이 사망하면 이 사건 M아파트를 상속인들이 각 1/4씩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망 G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X 원고들의 각 유류분의 비율(B)] - 원고들의 각 특별수익액(C) - 원고들의 각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1) 기본 법리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한편,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수증한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상속재산 : 없음

(3) 증여재산 : 1,122,767,050원(930,000,000원 + 85,898,000원 + 106,869,050원)

(가) 이 사건 M아파트 : 930,000,000원

① 이 사건 M아파트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산입 여부

㉠ 이 사건 M아파트의 증여 여부

원고는 망 G이 피고 D, E(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M아파트를 매매형식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M아파트를 망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고 시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증여로 처리하여 매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사건 M아파트를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살핀다.

피고들이 2021. 9. 24. 망 G과 사이에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M아파트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억 7,000만 원을 인수하였으며 2021. 10. 1. G 신규계좌로 차액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2021. 10. 5. 이 사건 M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G이 이 사건 M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할 무렵 망 G에게 이 사건 M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염가에 매매하여 평가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 2억

7,100만 원은 증여로 처리하였던 점, ② 피고들은 G 신규계좌에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망 G이 A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2021. 12. 초경 G 기존계좌 및 신규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241,959,386원이 이체되었던 점, ③ 피고 E은 2021. 12. 13. 다시 G 신규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으나, 피고 D가 임종 전 면회에 관한 연락을 받은 이후인 2021. 12. 15. 19:00경 G 신규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2억원이 이체되었고 위와 같은 이체내역에 관하여 피고들도 자신들이 인출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금전의 이체과정 및 그 금액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2억 3,000만 원을 망 G에게 지급한 후에도 위 피고들은 위 2억 3,000만 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망 G의 재산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망 G의 계좌에서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함으로써 망 G에게 귀속된 대금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M아파트는 그 거래형식과 상관없이 망 G으로부터 피고들에게 생전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㉔ 피고 E에 대한 증여가 피고 D의 특별수익인지 여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M아파트 중 1/2 지분이 피고 E에게 매매형식으로 증여되었는데, 피고 E은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D의 배우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G의 전체 재산 중 이 사건 M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망 G과 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M아파트는 망 G이 자녀인 피고 D에 대한 상속분을 그 배우자인 피고 E에게 선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E에 대한 위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을 해친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망 G의 이 사건 M아파트에 관한 증여가액 전액을 피고 D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위와 같이 피고 E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인 피고 D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이를 판단하지 않는다.

㉞ 피고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M아파트를 피고 D 측에서 취득하는 것은 이미 망 H 사망 전부터 합의된 사항이고 망 H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시 한 번 합의한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M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M아파트의 귀속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㉟ 이 사건 M아파트의 가액

망 G의 상속 개시 당시인 2021. 12. 15.경 이 사건 M아파트의 시가가 15억 원이었고 당시 이 사건 M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억 7,000만 원이 존재하여 피고들이 이를 인수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M아파트의 가액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9억 3,000만 원(1,500,000,000원 - 570,000,000원)을 피고 D의 특별수입으로 산입한다.

(나) 이 사건 T아파트 : 불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의 N아파트 매도 및 5,000만 원 대출 시기, 망 H 펀드계좌 및 예금계좌로부터 94,186,0005원(펀드계좌 2,700만 원 + 예금계좌 67,186,005원)이 인출된 시기, 피고 D가 이 사건 T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기가 일부 인접하여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 G이 이 사건 T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갑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V 토지 : 85,898,000원

피고 D가 2007. 7. 30. 망 G으로부터 V 토지를 증여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망 G의 상속 개시 당시인 2021. 12. 15.경 이 사건 V 토지의 시가가 85,898,000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인 85,898,000원을 피고 D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산입함이 타당하다.

(라) 현금 증여 : 106,869,050원

망 G이 2016. 1. 14. 피고 D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2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그 수치를 100으로 정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책정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2016	96.549	2021	103.181
------	--------	------	---------

결국, 위 현금 증여가액의 환산액은 106,869,050원($1\text{억 원} \times 103.181 \div 96.549$)이므로, 이를 피고 D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산입함이 타당하다.

(4) 상속채무 : 없음

(5) 소결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은 합계 1,122,767,050원(상속재산 0원 + 증여재산 1,122,767,050원 - 상속채무 0원)이다.

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율(B) 및 유류분액(A×B)

원고들 및 피고 D의 법정상속분은 각 1/4, 유류분율(B)은 각 1/8($1/4 \times 1/2$)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은 1,122,767,050원이므로, 그에 따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액(A×B)은 각 140,345,881원($1,122,767,050\text{원} \times 1/8$)이다.

(2) 특별수익액(C)

(가) 원고들 : 없음

(나) 피고 D: 1,122,767,050원

(3) 순상속액(D): 없음

(4) 유류분 부족액(단위: 원, 음수는 초과액을 의미한다.)

원고 A	140,345,881	0	0	140,345,881
원고 B	140,345,881	0	0	140,345,881
원고 C	140,345,881	0	0	140,345,881
피고 D	140,345,881	1,122,767,050	0	-982,421,169

라) 유류분반환의 범위

피고 D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망인의 재산을 특별수익한 상속인이므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인 140,345,8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2021. 5.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1. 5.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들이 망 H 명의의 Y아파트를 상속하고 피고 D가 이 사건 M아파트를 망 G 사망 후 상속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데, 원고들은 위 합의를 준수할 생각 없이 피고 D와 망 G을 기망한 것이고 위 행위가 기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착오를 유발하여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G은 2023. 2.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2021. 5.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며 그 취소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D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속분 가액 상당액과 유류분 청구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M아파트의 귀속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유류분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140,345,881원 및 위 각 돈 중 소장에서 구한 각 58,12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에서 추가된 각 82,220,8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4. 9. 13.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염우영

별지